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3914 폭행, 강제추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사윤(기소), 박우성(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17. 선고 2024고단250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DNA 감정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 부분 등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



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9. 16. 02:30경 대구 달서구 B, 3층 'C노래연습장' 10번 방에서 E,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똥똥하고 못 생겼다, 버르장머리 없다' 등의 말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과 왼쪽 팔뚝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3~4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위와 같은 폭행이 발생한 장소가 노래방 안이라는 것인지 밖이라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전체적인 취지상 노래방 안에서 그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툭툭 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볼도 때렸는데 폴스윙은 아니지만 아팠으며 다음날 보니 왼쪽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어느 쪽 뺨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쪽 뺨을 맞았고 피고인이 팔뚝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부위와 같이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팔 부분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날 보니 팔에 멍이 들어 있어서 피고인이 팔을 때린 것으로 추측하였다



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팔을 때린 사실을 직접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추행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과 별도로 폭행에 이를 정도까지 볼을 때린 사실이 별도로 있었던 것인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볼을 툭툭 쳤다'는 것에 불과하여 추행 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접촉만으로도 검출이 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동석자인 E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도 'E가 피고인을 제지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91, 94, 95쪽), 그 후 노래방 밖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당시에 E가 취한 태도(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노래방 밖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 서서 말리는 행동을 취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 된다¹⁾) 등에 비추어 보면, 노래방 안에서 E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노래방 안에서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폭행은 없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인 점, ②

1) 증거기록 45쪽의 CCTV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H" 02:15~02:27, 03:16~05:50 부분 등에서 E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수반된 신체접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28

판사 이상균 _____

판사 김정도 _____